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2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67,651,472	17,029,544
일반회계	490,422,468	14,712,674
특별회계	77,229,004	2,316,870
기타특별회계	77,229,004	2,316,87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986,731	29,602
주차장특별회계	825,346	24,76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9,734	5,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975,037	839,25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47,840	10,435
치수사업특별회계	353,898	10,617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280	30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6,517,154	1,395,515
도시개발특별회계	32,984	9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711,25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674,248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을 상호 이용할수 있다.